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6-70

제출년월일 : 2016. 8. 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정창

1. 개정사유

상위법인 「주민등록법」 현행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에 띄어쓰기 적용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 조례」로 변경

나. 제1조 중 "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36조에 따라"로 변경

다.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및 표기를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주민등록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4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6. 7. 21. ~ 2016. 8. 10.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다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16. 8. 16.)

마.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바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"를 "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 등(이하 "보험"이라 한다)에의"를 "「주민등록법」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 등의"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"(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)"를 "(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)"로 하고, 제2조 중 ""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""을 ""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""으로, "기타"를 "그 밖의"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"을 "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"으로, "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"을 "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"으로, "의하여 보험"을 "따라 보험·공제 등(이하 "보험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의한"을 "따른"으로 한다.

제4조 중 "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"을 "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"으로, "당해연도"를 "해당 연도"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”를 “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”로, “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”를 “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”을 “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”을 “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”을 “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”으로, “및 관계서류”를 “및 관계 서류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	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 등(이하 "보험"이라 한다)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 「주민등록법」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 등의 ----------.
제2조(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) 이 조례에서 "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"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주민등록증 발급업무,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	제2조(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) ------- "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"---------- 그 밖의 ------- ---------.
제3조(보험의 가입) ①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	제3조(보험의 가입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---------- ---------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---------- ---------- 따라 보

험에 가입할 수 있다.	험·공제 등(이하 "보험"이라 한다)--------.
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.	② ------ 따른 ---------- ----------.
제4조(보험료의 지급)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	제4조(보험료의 지급) --------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---- ---------- 해당 연도 ---------- ---.
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	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-------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---------- ----------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---------- 해당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	② 제1항에 따른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-------- ----------.
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	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 -------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----------

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·정비하여야 하며,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② ---------- -------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---------- ---------- 및 관계 서류---------- ---.